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658호
- 다. 제출일자 : 2025년 3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 안 이 유

- 국내 정원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 간 우호 교류정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상생협력 구현
-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정원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25년 정원행사 관련 지자체 간 우호 교류정원 1개소씩 조성
- 나. 조성 이후 유지관리 등은 행사주관 지자체에서 시행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5년도 지역교류협력기금(60백만원) 활용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진주시의 지자체 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25.4.1.)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나. 검토의견

1) 추진경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정원도시, 서울’¹⁾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의 도보권 거리에 공원과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정원도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 정책의 선명성을 더하고 있음.
- “서울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문화 확산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총 10회²⁾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하여 개최되고 있고 금년도는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임.
- 서울시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자체 간 우호 증진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에 상호 교류정원 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1) 정원도시, 서울('23.5.24.): ‘어딜가든, 서울가든’ ‘서울 어디에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

2)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번 포함, 제6회는 2020년~2021년에 걸쳐 개최

2)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근거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이하 “조례”)에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의무부담”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 범위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제1호)와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의 사무(제2호)가 해당됨.

- 동 협약서는 제2조(협력사항)에서 진주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서울정원을 조성(설계·시공)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조성된 진주정원을 운영·관리하는 등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조례 제6조(자료제출)³⁾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서(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동의안 및 별도 자료 확인 결과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조례 제4조⁴⁾제1항에서는 의회의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3)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4)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동의안의 경우 제330회 임시회(4.15.~5.2.) 의결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일(5.22.) 이전에 진주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시일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전보고⁵⁾ 후 협약체결 및 시의회 사후동의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써 그 사정이 인정되며, 협약서 제4조에 시의회 의결 이후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음.

3) 기타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정원을 교류 조성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는 목적이 수반⁶⁾된 것으로 ‘서울정원’과 ‘진주정원’에 구체적인 지역 장소성 및 고유의 정원문화가 내포될 때 문화의 확산이라는 협약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나, 협약서에는 단순히 ‘설계 및 시공’ 등 조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향후 추진상에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협약서 제3조(협약서의 변경)에서 ‘별도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장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협약서 변경 동의안 제출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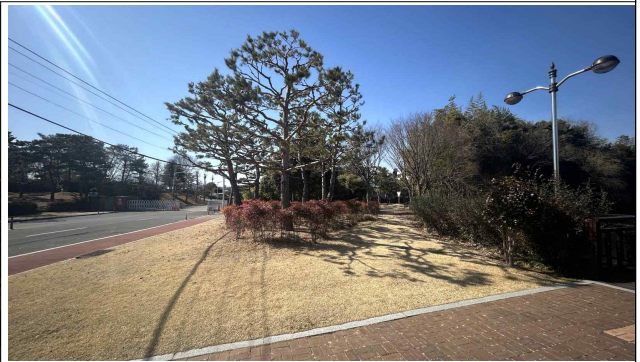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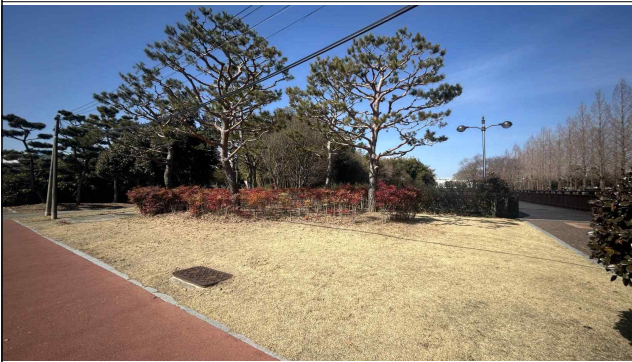
5)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전 보고일 : 의장 및 상임위원장('25.3.11.)

6)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서울시-부산·진주시 업무협약 체결계획(조경과-3970, '25.3.21.)

<진주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내 '서울정원' 조성 예정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진주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내 서울정원 조성 예정 대상지 위치도



진주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내 서울정원 조성 예정 대상지 현황사진

진주시 - 서울특별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서

진주시와 서울특별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양 도시간 우호 교류정원 조성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2025 서울국제 정원박람회’ 행사장 내 교류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한다.

1. 양 도시는 각 도시 내에 상대 도시 교류정원 부지를 제공한다.
2. 진주시의 서울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진주시가 담당한다.
3. 서울특별시의 진주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및 시공은 진주시가,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한다.

제3조(협약서의 변경) 양 도시는 별도 합의에 따라 이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 ① 이 협약은 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양도시가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 ① 양 도시는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기타사항)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5년 4월 1일



진주시장 조 규 일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